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2일,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24.) 상정,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순임)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률을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여 정식으로 도입하는 한편,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도입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풀뿌리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면적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과 전면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전면적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단위를 읍·면·동에서 통·리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협력형 모델’이 아닌 ‘통합형 모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면실시 여부와 주민자치회 제도의 재설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